#### 1. 개정이유

현행 규정이 일부 과거 법령을 인용하거나, 폐지된 표준을 참조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유효한 법령과 표준을 준수하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데이터 교환형식을 현재 유효한 표준인 지리마크업언어로 수정함 (안 제5조)
- 나. 지형지물 코드를 현재 유효한 표준인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으로 수정하고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해야 할 경우 現 「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도록함(안 제6조)
- 다. 위치의 기준을 現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 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따르도록 함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 호

##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데이타"를 "데이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""파일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"과 "GML 기반 기본지리정 보 교환표준"을 "법 제21조에 따른 국가표준인 지리마크업언어(GM L)를"로 한다.

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"을 각각 "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"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"기본 공간정보분과위원회 심의"를 "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"로 한다.

제7조 중 "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"을 "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10조 중 "2018년 1월 1일"을 "2024년 7월 1일"로, "12월 31일"을 "6월 30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 <u>데이타</u> 교환형식) 기본공간	제5조( <u>데이터</u> 교환형식)
정보의 교환형식은 <u>"파일 기반</u>	법 제21조에
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"과 "G	따른 국가표준인 지리마크업언
ML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	<u>어(GML)를</u>
<u>준"을</u>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	
국토교통부장관이 외부공개를	
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오픈 플	
랫폼에서 호환될 수 있는 형식	
이어야 한다.	
제6조(지형지물 코드) ① 기본공	제6조(지형지물 코드) ①
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" <u>수</u>	<u>수</u>
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	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
<u>통합표준</u> "에서 정한 지형지물	
코드를 적용한다.	·.
②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	②
"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	<u>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</u>
지물 통합표준"과 일치하는 지	<u> 준</u>
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	
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	
할 수 있다.	
③ 제2항의 별도 지형지물 코드	3
는 " <u>수</u> 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	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
형지물 통합표준"의 대분류 체	<u> 준</u>
계를 준수하여야 하며, <u>기본공</u>	

<u>간정보분과위원회 심의</u>를 받아 야 한다.

제7조(위치의 기준) 기본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, 기본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도입할수 있다.

제10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 관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.

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
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
제7조(위치의 기준)
「 <u>공간정보의 구</u>
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-
제10조(재검토기한)
2024년 7월 1
<u></u> 일
<u>-</u> 6월 30일